

2020년 1학기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20. 1. 17(금) ~ 2. 21(금) / 선착순 모집

- 방문접수 : 월~목 : 09:00~17:00 / 금 : 09:00~13:00 (월·목 점심시간은 12:00~13:00 접수불가)
※ 월~금 저녁 9시까지 서류제출은 가능함 (토·일·공휴일 휴무)

□ 모집과목

전공명	과 목 명 ^{*)}	구분 ^{**)}	학점	수업요일	수업시간	모집인원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전필	3	목	18:30~21:30	160명
아동학	아동미술	전선	3	목	18:30~22:30	40명
	아동수학지도	전선	3	화	18:30~21:30	40명
	보육실습	전필	3	월	18:30~21:30	80명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실습	전선	3	화	19:00~22:00	80명

*) 현장실습과목(음영 부분)의 실습 세부사항은 아래 「현장실습 모집 요강」 참조

***) 전필 - 전공필수, 전선 - 전공 선택

***) 현장실습과목(음영 부분)은 30~40명 단위로 분반하여 진행함

□ 지원자격 : 고졸 이상. 현장실습과목의 경우 선수과목 이수자에 한함(현장실습모집요강 참조)

□ 개 강 일 : 2020. 2. 24(월)부터 각 과목별 해당 요일에 개강

□ 접수방법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① [본교서식] 수강신청서(증명사진 포함) 1부 ② [본교서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선수과목 성적확인(증명)서 1부 (현장실습과목에만 해당) ※ 성적확인(증명)서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기관에서 발급 가능함. 성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수강증명서로 접수가능하며, 성적확인서 발급 시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성적확인서가 개강일로부터 2일 전까지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접수 취소됨)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아동학(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 21만원 현장실습(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 - 30만원
수강료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6-101-222860 (예금주 : 대구보건대학교) ※ 납부기한 : 우편(등기)접수는 우편 도착일까지,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 당일 까지 수강료를 납부해야 접수완료 됨(우편접수자는 개별문자 발송 예정)
신청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접수장소	대구시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대구아트센터 3층 302호)

□ 상담 및 문의 : 053-320-1285

□ 특 전

- 대구보건대학교 편의시설 무료 이용(도서관, Global Zone, Job cafe 등)
- 대구보건대학교 헬스매니지먼트센터 이용시 할인 적용
-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 가능

방문접수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오셔야 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원에는 공용PC 및 공용프린터가 없으며 신청서 양식도 비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장실습과목 모집 요강

구분	공 통 사 항			
접수기간	2020년 1월 17일(목) ~ 2.21(금) / 선착순 마감			
접수상담 / 서류제출	평생교육원 : 053)320-1285 (학점은행제 담당자)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무실(대구아트센터 3층 302호) ※ 월~목 9:00~17:00 / 금 9:00~13:00 (월~금 저녁 9시까지 서류 제출은 가능)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인터넷, 전화 접수 불가)			
과 목 명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	
모집인원	160명	80명	80명	
수 강 료	30만원(3학점, 학점당 10만원)			
실 습 세 미 나 (이론 수업)	일자	2020년 3월 5일(목) 2020년 3월 12일(목) 2020년 3월 26일(목) 2020년 4월 23일(목) 2020년 5월 28일(목)	2020년 3월 2일(월) 2020년 3월 16일(월) 2020년 3월 23일(월) 2020년 4월 20일(월) 2020년 5월 25일(월)	2020년 3월 3일(화) 2020년 3월 10일(화) 2020년 3월 17일(화) 2020년 5월 26일(화) 2020년 6월 2일(화)
	시간	18:30~21:30 (1일3시간)	18:30~21:30 (1일3시간)	19:00~22:00 (1일3시간)
출석 기준	총 5회 중 4회 이상 출석해야 함 (출석률 80% 미만 시 과락)			
선수과목 ^{*)}	총 6개 과목 이상 이수자 (필수4개+선택2개 과목 이상)	총 6개 과목 이상 이수자 (과목영역별 구분 없음)	총 4개 과목 이상 이수자 (필수4개 과목 이상)	
실 습	방법	수강신청 시, 실습처(기관)을 개인별로 직접 선정하여 신청 (아래 과목별 세부요강 참조)		
	실습 선정 지역	대구지역 - 경북지역 일부(대구보건대 학교에서 편도 120km 거리 이내)	대구지역	대구지역 - 경북지역 일부(대구보건대 학교에서 왕복 2시간 거리 이내)
	기간	3. 6.(금) ~ 5. 22.(금) ※ 지정기간 외 실습불가	3. 9.(월) ~ 5. 22.(금) ※ 지정기간 외 실습불가	3. 18.(수) ~ 5. 25.(월) ※ 지정기간 외 실습불가
	시간	120시간 ^{**)}	240시간	160시간
	실습비	실습지도비는 개인별로 실습처에 직접 납부함	본원으로 납부 후 본원에서 실습처에 납부함	실습지도비는 개인별로 실습처에 직접 납부함
제출서류	①[본교서식] 수강신청서 ②[본교서식] 개인정보동의서 ③성적확인서 ※ 성적확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수강증명서로 선접수가능. 추후 성적증명서 발급 시에 즉시 제출해야 함. 개강일 2일 전까지 미제출 시 접수 취소됨	①[본교서식] 수강신청서 ②[본교서식] 보육실습동의서 ③[본교서식] 개인정보동의서 ④성적확인서 ※ 성적확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수강증명서로 선접수가능. 추후 성적증명서 발급 시에 즉시 제출해야 함. 개강일 2일 전까지 미제출 시 접수 취소됨	①[본교서식] 수강신청서 ②[본교서식] 개인정보동의서 ③성적확인서 ※ 성적확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수강증명서로 선접수가능. 추후 성적증명서 발급 시에 즉시 제출해야 함. 개강일 2일 전까지 미제출 시 접수 취소됨	

*) 현장실습 신청자격요건 임 : 선수과목을 미 이수 하거나 수강중인 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표1 참조]”을 법령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실습시간 120시간 적용(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실습시간 160시간, 실습세미나 30시간 적용)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부요강

□ 현장실습 신청 자격 : 아래 과목 중 총 6개 과목(필수 4개 + 선택 2개) 이상 이수

1) 필수 4개과목 이상 이수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2) 선택 2개과목 이상 이수

-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 교과목명 변경과목 모두 인정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의료사회사업론 →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 학교사회 복지론

▶ 신규 교과목 인정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실습처 선정

1) 실습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협회소개 → 공지사항 → 공지번호 2258번 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97호]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공고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공고일_2019.12.31.)xlsx 파일에 등록된 기관에서 선정 할 것

2) 실습처의 지도자의 선정기준을 확인할 것

- ①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직 이어야 함
- ②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 ③ 실습이 실시되는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해야 함

3) 실습처는 대구보건대학교에서 편도 120km 거리 이내 지역까지 가능함

※ 포털사이트 지도 검색기준 (출발지: 대구보건대학교 / 도착지: 실습(예정)기관)

4)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1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해야 함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5) 주말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실습지도자가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6)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지도교수 현장 점검은 필수사항 임)

7) 본인 근무기관에서는 실습 불가 함(근무지 운영주체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기관도 동일한 직장으로 간주함)

8) 교육원에서 실습처로 공문을 보내는 시기는 개강일 다음날 3.6(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임

□ 실습 의뢰

1) 실습기관의 섭외 및 실습협조는 실습생이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2) 실습지도자 1인이 1회기(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당 최대 5명,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평일, 주말, 주간, 야간 실습의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1건으로 보며 같은 기간 내에 5명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

3) 실습지도비는 수강생 개인이 실습기관과 협의 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수강료 외 별도부담)

보육실습 세부요강

□ 현장실습 신청 자격 :

- 1) 과목 영역별 구분 없이 총 6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수강신청서 양식 확인)

□ 실습처 선정

- 1) 실습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보육 실습기관은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http://daegu.childcare.go.kr/cccf/main.jsp>) 내 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등록된 실습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 2) 실습지도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자격기준에 준한 자로 선정해야 함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단, 보육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원장이 담임을 맡고 있을 경우 실습지도 가능)

- 3) 실습기관은 대구지역만 가능함
- 4) 실습시간 이수기준은 6주 240시간으로 하며 1일 8시간 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7시 사이에 실습한 경우에만 인정 함(분할 실습 가능. 예)4주 연속+2주 연속)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관련으로 실습시간 기준을 6주 240시간으로 시행함
- 5) 4대 보험가입자는 퇴사 또는 휴직 처리 후 실습가능 하며, 휴직자는 휴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6) 본인 근무기관에서는 실습 불가함
- 7)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지도교수 현장 점검은 필수사항 임)
- 8) 교육원에서 실습처로 공문을 보내는 시기는 개강일 다음날 3.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임

□ 실습 의뢰

- 1) 실습기관의 섭외 및 실습협조는 실습생이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2) 실습지도자 1인 최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 3) 실습지도비는 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납부 후 평생교육원에서 기관에 납부함
(수강료 외 별도부담)

평생교육실습 세부요강

□ 현장실습 신청 자격

- 1)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실습처 선정

- 1) 실습처는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 및 제19조~21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
([표2] 참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practice/recruit>)에서 실습기관정보 탭(실습생모집)을 통해 검색하여 선정할 수 있음

- 2)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2015. 2 교육부)」의 자격기준에 준한 자로 선정해야 함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선정해야 함(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함)

- 3) 실습처는 **대구지역 및 경북지역(왕복 2시간 거리 이내) 일부까지** 가능함
- 4) 실습시간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해야 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 5)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하나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간 또는 주말에 실습을 할 경우 해당시간에 개설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
- 6)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 (지도교수 현장 점검은 필수사항 임)
- 7) 교육원에서 실습처로 공문을 보내는 시기는 개강일 다음날 3.18(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임

□ 실습 의뢰

- 1) 실습기관의 섭외 및 실습협조는 실습생이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2) 실습지도자 1인 최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3) 실습지도비는 수강생 개인이 실습기관과 협의 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수강료 외 별도부담)

[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구분	현행(2019.12.31. 이전)	개정(2020.01.01. 이후)
필수과목	<p style="text-align: center;">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p>	<p style="text-align: center;">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p>
선택과목	<p style="text-align: center;"> 가족복지론 (추가) 교정복지론 (추가) 노인복지론 (추가) (추가) (추가)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추가) (추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p>	<p style="text-align: center;">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p>

[표2]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2015. 2 교육부) 고시

구분	기관유형		예시	
평생교육법	① 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	
	② 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③ 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④ 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 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고·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령*	⑥ 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⑦ 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⑧ 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 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설치·운영 법적 근거 및 평생교육 사업 수행 여부 확인